

	실병관리청	보	도 침	; 고	. 자 료
배 포 일	배 포 일 2020. 11. 17. (총 26매)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홍 정	익	전	화	043-719-9370
담 당 자	진 여 원,	최 은 경	[조 Γ	043-719-93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0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8,998명(해외유입 4,194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1명으로 총 25,860명(89.1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2,64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60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4명(치명률 1.70%)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ᄹ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202	87	0	2	12	18	1	0	0	38	13	0	9	0	16	3	3	0
누계	24,804	6,397	547	7,112	983	505	417	120	67	5,240	395	167	636	125	216	1,538	296	43

^{*} 지자체 오신고로 국내 발생 확진자 누계 변동(11.16. 0시 기준, 서울(-1), 양성→음성)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1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구분	합계	중국	아시아 (중 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8	0	14	2	12	0	0	8	20	8	20	
누계	4.194	27	2,084**	756	1,191	118**	18	1,969	2,225	2,303	1,891	
ㅜ게	4,194	(0.6%)	(49.8%)	(18.0%)	(28.4%)	(2.8%)	(0.4%)	(46.9%)	(53.1%)	(54.9%)	(45.1%)	

^{*}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방글라데시 2명(2명), 러시아 8명(4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유럽: 우크라이나 1명(1명), 스웨덴 1명 아메리카: 미국 11명(10명), 멕시코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유입국가 대륙 누계 변경(11.9. 0시 기준, 아시아 -1, 아프리카 +1)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16.(월) 0시 기준	25,759	2,515	55	494
11.17.(화) 0시 기준	25,860	2,644	60	494
변동	(+)101	(+)129	(+)5	0

^{* 11}월 16일 0시부터 11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11월 17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과 관련하여 11월 15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군무원	701	_, _	추 :	가전파	
구분	계	- · - (지표환자 포함)	군인	가족	종교활동 참석자	참석자 가족 및 지인	
11.15	19	6	5	7	1	-	
금일	26(+7)	6	5	8(+1)	5(+4)	2(+2)	

- 서울 성동구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1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 (구분) 이용자 2명(지표환자 포함), 종시자 7명, 기족 및 지인 8명, 기타 1명(체육시설 방문자)
 - * (추정감염경로) 지표환자 \rightarrow 가족 및 지인 \rightarrow 이용자·종사자·기타로 추가 전파
- **서울 서초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11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 (구분) 이용자 1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4명
- 수도권 가을산악회와 관련하여 1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 (구분) 가족 7명(지표환자 포함), 산악회 회원 7명
 - * (추정감염위험요인) 산악회 활동 시 식사 등 모임









- 서울 중구 제조업 공장과 관련하여 11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 (구분) 가족 7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4명. 지인 및 지인가족 2명
 - * (감염경로) 지표환자 → 가족 → 동료·지인·지인가족으로 추가 전파
- 수도권 미술대학원/동아리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구분	계	가족 및 지인	대학원생 및 회원
가족(지표환자 포함)	3	3	-
미술대학원	8(+3)	1(+1)	7(+2)
동아리	8(+2)	1	7(+2)
계	19(+5)	5(+1)	14(+4)

- * (지역) 경기 8명(+2), 서울 8명(+1), 충남 1명, 경남 1명(+1), 광주 1명(+1)
-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하여 11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 (구분) 가족 3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1명, 지인 1명, 기타 7명
-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	계	계 종사자 이용자		추가전파			
丁正	771	(지표환자 포함)	VI5^I	가족	지인	기타	
전일	11	1	3	-	7	-	
금일	17(+6)	1	3	1(+1)	8(+1)	4(+4)	









○ 광주광역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구분	계	의료진 (지표환자 포함)	환자	보호자	가족	기타
11.15	9	6	2	1	-	-
금일	26(+17)	7(+1)	5(+3)	4(+3)	5(+5)	5(+5)

○ 전남 순천시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	계		음식점관련	사우나관련		
TE	711	방문객 (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방문객	기타	
전일	6	1	4	0	1	0
금일	13(+7)	1	4	1(+1)	6(+5)	1(+1)

○ 경북 청송군 기족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	계	가족모임 참석자	가족모임 외 추가전파					
TE	771	(지표환자 포함)	가족	동 료	지인	기타		
전일	19	3	4	11	1	-		
금일	23(+4)	4(+1**)	3(-1**)	11	2(+1)	3(+3)		

- * (지역) 경북 18명(+3), 충남 2명, 대구 2명(+1), 서울 1명
- ** (재분류) 미참석 가족 1명이 가족모임 참석으로 확인되어 재분류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11월 19일(목) 0시부터 12월 2일(수)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고 알렸다.
 - * **인천시**의 경우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









-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방역관리가 강화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 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공급 현황 및 혈장 공여 현황**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9개 병원 801명 (11.16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8개 의료기관*에서 채혈된 **회복기 혈장**에 대한 **수혈이 51명**의 환자에게 이루어졌다(11.17일 10시 기준).
 - * 강릉아산병원혈액원, 고려대안산병원혈액원, 순천향대부천병원혈액원, 순천향대서울병원혈액원, 신촌세브란스병원혈액원, 아주대병원혈액원, 울산대병원혈액원, 인하대병원혈액원









-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1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13명의 환자가 등록되었**다(11.16일 기준).
 - 아울러 혈장 확보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대구에서 단체 혈장 공여가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3주간 지속될 예정으로,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 **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경증-중등증 환자 대상 **임상 2/3상** 시험이 **17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300명 환자 모집에 **131명이 등록**됐다.
 - * 한국 17명, 루마니아 113명, 미국 1명(11.17일 12시 기준)
-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자분과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명부 미작성, 발열 체크 미흡** 등이며, **직장**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 밀폐된 면접장에서 지원자들에게 마스크를 벗도록 하여 면접을 진행하고, 매일 아침 **좁은 공간**에 직원 **수백 명**이 모여 오랫









동안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사무실에서 많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한 사업장의 경우 업무 공간을 방문한 외부인이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발생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연말연시 행사·모임(수능·성탄절·송년회·졸업식 등) 증가,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 불충분한 환기 등 밀집·밀폐·밀접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11월 13일~)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 또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가족·지인 모임, 회식, 흡연 등) 및 장소(식당, 카페,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대규모 유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임을 유념하시고, 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 4.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5.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7.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 8.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① **일일 확진자 현황** (11.17. 0시 기준, 28,998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		결과 역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TE	5 71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급시 중	크지 급 0				
	2,797,691	28,768***	25,759	2,515	494	38,314	2,730,609				
11.17.(화) 0시 기준	2,815,755	28,998	25,860	2,644	41,202	2,745,555					
변동	+18,064	+230	+101	+129	0	+2,888	+14,946				

- * 11월 16일 0시부터 11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 지자체 오신고로 누계 변동(11.16. 0시 기준 1건, 서울(-1), 양성→음성)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0,000 일일 누적 격리중·격리 해제자 현황
25,000
20,000
15,000
5,000
1,20, 1,30, 29, 2,19, 2,29, 3,10, 3,20, 3,30, 49, 4,19, 4,29, 59, 5,19, 5,29, 68, 618, 628, 78, 7,18, 7,28, 87, 8,17, 8,27, 96, 9,16, 9,26, 106, 10,161,026, 115, 1115









②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17. 0시 기준, 28,998명)

	< 지역팀	별 확진자 현횡	(1.3일 이후 누계) >	
TICH	금일	신규	하지만나게	(0/)	인구10만명당
지역	국내발생	해외유입	확진자누계	(%)	발생률 [*]
서울	87	3	6,903	(23.81)	70.92
부산	0	0	612	(2.11)	17.94
대구	2	1	7,206	(24.85)	295.75
인천	12	1	1,103	(3.80)	37.31
광주	18	0	578	(1.99)	39.68
대전	1	0	454	(1.57)	30.80
울산	0	0	167	(0.58)	14.56
세종	0	1	86	(0.30)	25.12
경기	38	14	6,050	(20.86)	45.66
강원	13	0	427	(1.47)	27.72
충북	0	0	218	(0.75)	13.63
충남	9	0	713	(2.46)	33.59
전북	0	0	179	(0.62)	9.85
전남	16	0	264	(0.91)	14.16
경북	3	0	1,615	(5.57)	60.66
경남	3	0	391	(1.35)	11.63
제주	0	0	63	(0.22)	9.39
검역	0	8	1,969	(6.79)	-
총합계	202	28	28,998	(100)	55.93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	지역	별 2	격리	중,	격리	해제	, 사	망자	· 현	황* (1	.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저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 역
격리 중	2,644	899	29	35	54	65	15	3	4	596	144	30	146	15	78	26	73	4	428
격리해제	25,860	5,923	568	6,975	1,038	510	433	162	82	5,349	279	185	559	163	184	1,532	318	59	1,541
사망	494	81	15	196	11	3	6	2	0	105	4	3	8	1	2	57	0	0	0
합 계	28,998	6903	612	7,206	1,103	578	454	167	86	6,050	427	218	713	179	264	1,615	391	63	1,969

^{* 11}월 16일 0시부터 11월 1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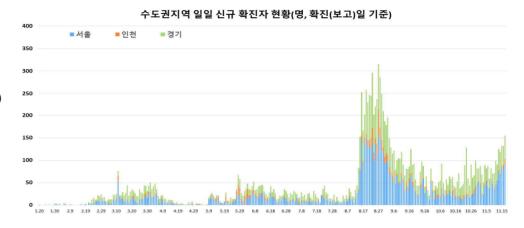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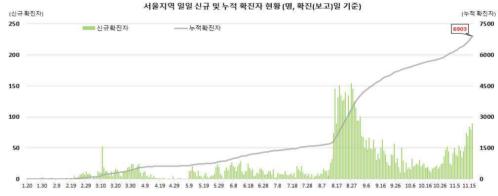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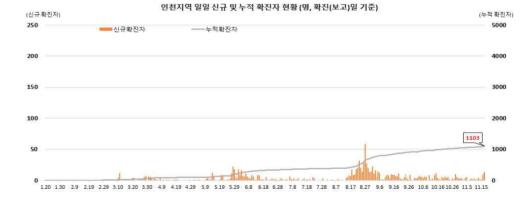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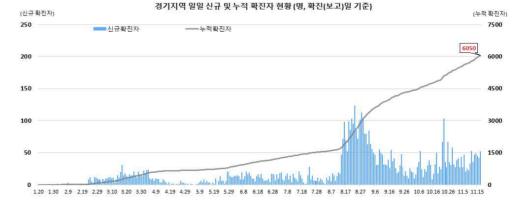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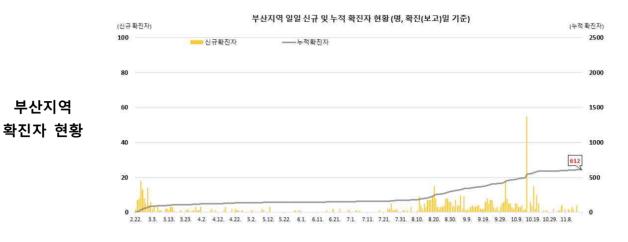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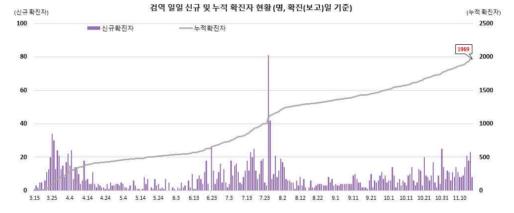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검역 확진자 현황

부산지역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17. 0시 기준, 28,998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7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230	(100)	28,998	(100)	55.93			
 성별	남성	118	(51.30)	13,616	(46.95)	52.65			
02	여성	112	(48.70)	15,382	(53.05)	59.20			
	80세 이상	8	(3.48)	1,258	(4.34)	66.24			
	70-79	18	(7.83)	2,315	(7.98)	64.18			
	60-69	38	(16.52)	4,607	(15.89)	72.62			
	50-59	44	(19.13)	5,306	(18.30)	61.22			
연령	40-49	36	(15.65)	3,926	(13.54)	46.80			
	30-39	26	(11.30)	3,650	(12.59)	51.81			
	20-29	37	(16.09)	5,547	(19.13)	81.50			
	10-19	12	(5.22)	1,605	(5.53)	32.49			
	0-9	11	(4.78)	784	(2.70)	18.90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4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17.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0	(0.00)	494	(100)	1.70			
 성별	남성	0	(0.00)	260	(52.63)	1.91			
O Z	여성	0	(0.00)	234	(47.37)	1.52			
	80세 이상	0	(0.00)	251	(50.81)	19.95			
	70-79	0	(0.00)	157	(31.78)	6.78			
	60-69	0	(0.00)	57	(11.54)	1.24			
	50-59	0	(0.00)	23	(4.66)	0.43			
연령	40-49	0	(0.00)	4	(0.81)	0.10			
	30-39	0	(0.00)	2	(0.40)	0.05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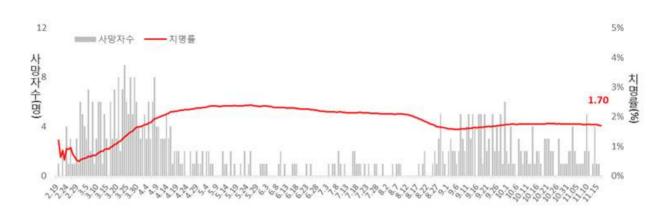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 위경	중증 현	황 >						
구분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계	53	51	50	53	58	57	54	49	53	50	54	56	55	60

 구분	 위중증	(%)	
<u></u> Л	60	(100.0		
<u></u>		· · ·	100.0	,	
80세 이상	11	(18.3)	
70-79세	28	(46.7)	
60-69세	17	(28.3)	
50-59세	3	(5.0)	
40-49세	1	(1.7)	
30-39세	0	(0.0)	
20-29세	0	(0.0)	
10-19세	0	(0.0)	
0-9세	0	(0.0)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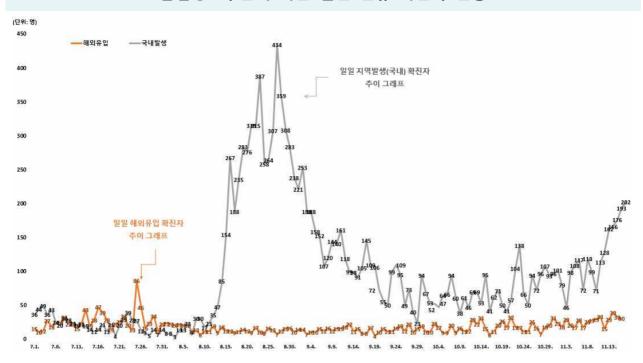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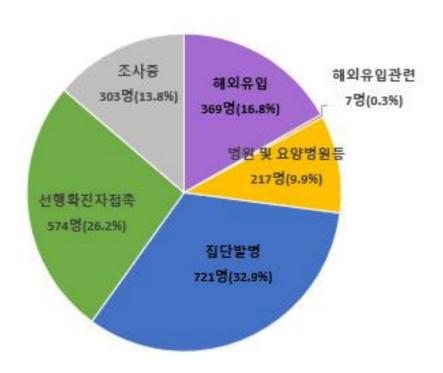


⑤ 감염경로

<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1.4일 0시~11.17일 0시까지 신고된 2,191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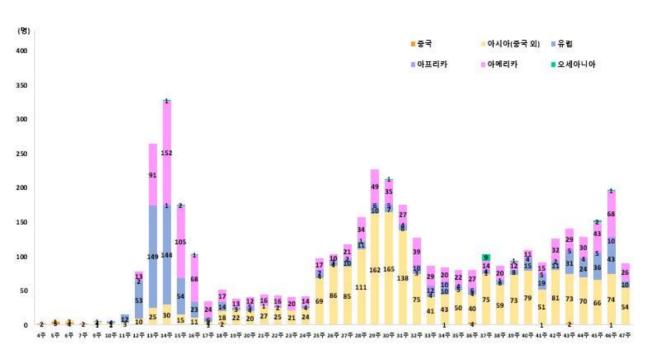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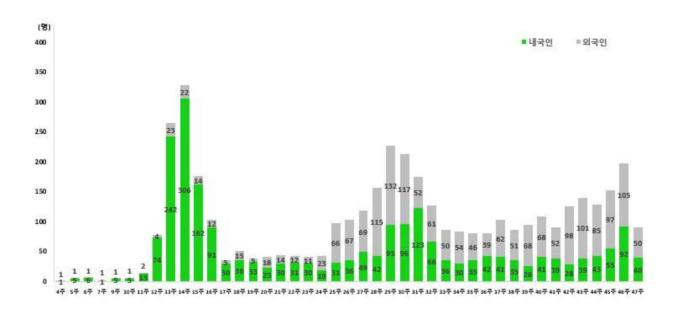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유입국가 대륙 누계 변경(11.9. 0시 기준, 아시아(중국 외) -1, 아프리카 +1)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T 80	20			
		1	:	확진환지		병, %)	: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십단말 신천지 관련	생 관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	조사중	신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6,903	506	3,746	8	3,660	78	1,411	1,240	90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부산	612	65	428	12	361	55	61	58	0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대구	7,206	94	5,420	4,512	904	4	938	754	3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인천	1,103	120	709	2	698	9	146	128	13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광주	578	73	410	9	395	6	55	40	18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대전	454	37	274	2	272	0	90	53	1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울산	167	47	84	16	64	4	21	15	0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세종	86	19	52	1	50	1	11	4	1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경기	6,050	810	3,518	29	3,421	68	980	742	52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강원	427	32	277	17	259	1	71	47	13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60명) • 경기 113명, 서울 47명
충북	218	51	97	6	84	7	47	23	0	• 수도권 중학교/헬스장 관련(86명) * 서울 59명, 경기 22명, 광주 2명 등
충남	713	77	423	0	422	1	128	85	9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69명) * 서울 65명, 경기 4명 • 충남 아산 직장 관련(69명)
전북	179	54	78	1	77	0	30	17	0	* 충남 40명, 경북 16명, 서울 7명 등 •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 관련(27명)
전남	264	48	149	1	146	2	50	17	16	* 전남 27명 • 경기 광주시 가족모임 관련(26명) * 경기 20명, 전남 5명, 인천 1명
경북	1,615	77	1,194	565	629	0	201	143	3	•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 관련(24명) * 서울 22명, 경기 2명
경남	391	95	247	32	212	3	22	27	3	•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24명) * 서울 16명, 경기 6명, 강원 1명, 총남 1명 •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18명)
제주	63	20	15	0	14	1	21	7	0	* 서울 10명, 경기 8명 • 강원 철원군 장애인요양원 관련(14명)
검역	1,969	1,969	0	0	0	0	0	0	8	* 강원 14명 • 서울 서초구 사우나 관련(9명) * 서울 9명
합계	28,998	4,194	17,121	5,213	11,668	240	4,283	3,400	230	• 경기 시흥시 공원관리근로자 관련(7명) * 경기 7명
티기	(%)	(14.5)	(59.0)	(18.0)	(40.2)	(8.0)	(14.8)	(11.7)	230	•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 관련(34명) * 강원 25명, 경기 7명, 대전 1명 등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43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누적 빌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단위: 명> 인구10만명당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발생자 수 [*]
미국	10,796,432	243,758	155,001	1,216	2.26	3,280.59
인도	8,845,127	130,070	30,548	435	1.47	646.24
브라질	5,848,959	165,658	38,307	921	2.83	2,753.75
러시아	1,948,603	33,489	22,778	303	1.72	1,354.14
프랑스	1,945,468	44,215	27,123	302	2.27	2,970.18
스페인**	1,458,591	40,769	-	1	2.80	3,143.52
영국	1,369,322	51,934	24,962	168	3.79	2,043.76
아르헨티나	1,304,846	35,307	8,468	262	2.71	2,893.23
콜롬비아	1,191,004	33,829	8,307	160	2.84	2,391.57
이탈리아	1,178,529	45,229	33,977	546	3.84	1,990.76
멕시코	1,003,253	98,259	5,860	635	9.79	758.32
페루	934,899	35,177	2,249	71	3.76	2,841.64
독일	801,327	12,547	10,824	62	1.57	972.48
이란	762,068	41,493	12,543	459	5.44	920.37
남아프리카공화국	751,024	20,241	1,842	35	2.70	1,292.64
폴란드	712,972	10,348	21,854	303	1.45	1,876.24
우크라이나	545,689	9,697	9,832	94	1.78	1,245.87
벨기에	535,843	14,421	2	22	2.69	4,619.34
칠레	531,273	14,819	1,597	42	2.79	2,836.48
이라크	519,152	11,670	2,237	47	2.25	1,285.03
인도네시아	467,113	15,211	4,106	63	3.26	173.33
체코	460,116	6,208	1,887	150	1.35	4,340.72
네덜란드	447,335	8,475	5,408	43	1.89	2,615.99
방글라데시	432,333	6,194	1,837	21	1.43	267.86
스웨덴**	177,355	6,164	-	-	3.48	1,755.99
카자흐스탄**	161,248	2,365	-	-	1.47	866.92
일본	118,136	1,885	1,459	2	1.60	93.09
중국	86,361	4,634	15	0	5.37	6.08
우즈베키스탄	70,243	598	141	0	0.85	214.16
키르기스스탄	66,983	1,203	479	4	1.80	1,080.37
싱가포르	58,119	28	3	0	0.05	985.07
말레이시아	47,417	309	1,208	3	0.65	145.90
호주	27,725	907	14	0	3.27	110.46
태국	3,875	60	9	0	1.55	5.59
베트남	1,281	35	16	0	2.73	1.32
대한민국	28,998	494	230	0	1.70	55.93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	행 단계	전국 유 ³	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화·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 전체, 2r 유지가 되지	n 이상 거리

^{*}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 확대

□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비교

구분	종전		변경 (11.13일부터 적용)
	▶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시설 12종 시설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23종
	(기 안내*)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Rightarrow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적용 시설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 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Rightarrow	<u> </u>
	▶ 집회·시위장	\Rightarrow	<u> </u>
	▶ 의료기관 <u>,<신설></u>	\Rightarrow	▶ 의료기관 <u>, 약국</u>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Rightarrow	▶ <좌동>
	▶ <신설>	\Rightarrow	▶ 종교시설
	▶ <신설>	\Rightarrow	▶실내 스포츠 경기장
	<u></u> <신설>	\Rightarrow	<u>▶ 고위험 사업장</u> * <u>콜센터</u> , 유통물류센터
	<u>▶ <신설></u>	\Rightarrow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10.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10.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처분 기준 전·후 비교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구분	종전	변경 (11.13일부터 적용*)
행정 명령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의 집회·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 *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포함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의2에 의한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조치 * 필요시 별도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가능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위반 시 제80조(벌칙) 제7호 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고발 조치 및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위반 시 • (관리자운영자) 제83조(과태료) 제2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이용자) 제83조(과태료) 제4항에 의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10만원, (2차 이상) 10만원

* 단, 마스크 착용 외 다른 방역수칙 위반은 11.7일부터 적용(11.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참조)









붙임 4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 1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u> </u>	프 구파 에지시 ㅊ 에지엉덩/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예외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M OL 11±1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 (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예외 상황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 (항공기 조종사 등) 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나 보다 지마도 우기 이르의 가다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겉면,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권고 기준」



내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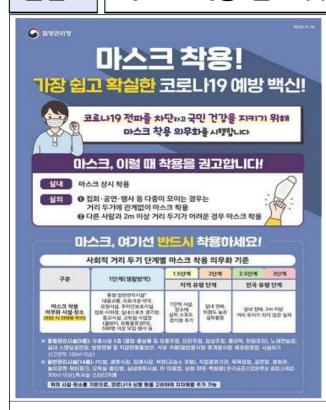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 ★ KF94 마스크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 KF80이상 마스크
 -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과 기저질환자[®]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U마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더운 여름철·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
 - 1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2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호흡 용이성 → 호흡 용이성 → 호흡 용이성 → 호흡 용이성









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착용



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워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 · 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 · 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갂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첚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 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 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 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 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